

수질오염방지시설(제7조 관련)

1. 물리적 처리시설

- 가. 스크린
- 나. 분쇄기
- 다. 침사(沈砂)시설
- 라. 유수분리시설
- 마. 유량조정시설(집수조)
- 바. 혼합시설
- 사. 응집시설
- 아. 침전시설
- 자. 부상시설
- 차. 여과시설
- 카. 탈수시설
- 타. 건조시설
- 파. 증류시설
- 하. 농축시설

2. 화학적 처리시설

- 가. 화학적 침강시설
- 나. 중화시설
- 다. 흡착시설
- 라. 살균시설
- 마. 이온교환시설
- 바. 소각시설
- 사. 산화시설
- 아. 환원시설
- 자. 침전물 개량시설

3. 생물화학적 처리시설

- 가. 살수여과상
- 나. 폭기(瀑氣)시설
- 다. 산화시설(산화조(酸化槽) 또는 산화지(酸化池)를 말한다)
- 라. 혐기성·호기성 소화시설
- 마. 접촉조(接觸槽: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)
- 바. 안정조

사. 돈사똥발효시설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5.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

비고: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
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
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
니한다. 다만,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
다.